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2가단10067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5. 12.

판 결 선 고 2022. 5. 26.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분 9분의 2에 관하여 2017. 11. 24.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0,222,222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222,222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판사 임윤한

별지

부동산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경상남도 고성군 , 아파트 동[도로명주소] 경상남도 고성군

철근 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아파트

1층 내지 5층 각 245.61㎡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경상남도 고성군 대 2189㎡1. 경상남도 고성군 대 1120㎡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5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81.87㎡

(대지권의 표시)

1, 2 소유대지권 330900분의 6657 ㎡.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소외 C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에 대하여 양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 이고, 위 C 은 원고에게 위 양수금을 지급하여야 할 '채무자' 이며,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위 C 의 상속지분을 분할협의에 의하여 취득한 약의의 '수익자' 입니다.

2. 이 사건의 발생 경위

가. 양수금채권(피보전채권)의 존재

소외 D 유한회사는 위 C 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양수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2014차전76050) 위 법원은 2014. 12. 30. '위 C 은 위 D (유)에게 금 17,054,247원 및 그 중 금 5,293,540원에 대하여 2014. 12. 3.부터 원채일까지 연 19%의,

또한 같은 법원에 양수금 지급명령을 신청(2014차전76084), 위 법원은 2014. 12. 30. ' 위 C 은 위 D (유)에게 금 8,649,962 원 및 그 중 금 2,287,575원에 대하여 2014. 12. 4.부터 원채일까지 연 2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위 각 결정은 2015. 1. 13., 2015. 1. 14. 위 C 에게 각 송달되어 2015. 1. 28., 2015. 1. 29. 확정되었습니다(갑 제1호 중의 1, 2 지급명령 각 참조).

이후 위 D (유)는 2019. 1. 25. 원고에게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금액을 제외한 미상환원금 6,637,075원 및 그에따른 이자등의 금액을 양도하였습니다(갑 제2호증의 1, 2 각 자산양수도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 참조).

따라서 위 미지급 양수금채권과 관련하여 위 C 은 원고에게 금 12,884,918원 및 그 중 금 4,626,291원에 대하여는 2021.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금 2,010,784원에 대하여는 2021.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갑 제3호증 채권계산서 참조).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재

위 C 의 아버지는 소의 E 인데, 위 E 은 2017. 11. 24. 사망하였고, 위 C 은 위 E 의 재산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상속할 수 있었음에도(위 E 의 상속인들 및 위 C 의 상속지분에 대해서는 상속등기신청서류 등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구체적으로 밝히겠습니다).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시 피고에게 자신의 지분을 모두 넘겨버려, 2017. 12. 29. 피고 단독 명의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갑 제4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대법원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설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위 부동산 중 채무자인 위 C의 상속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위 C의 재산인데, 위 C은 분할협의를 통해 위 지분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여 그 무자력의 상태를 더 심화시켰는바, 위 분할협의를 명백히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대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은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바(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등 참조),

수익자인 피고는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는 채무자 C의 어머니로 추정됩니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무

(1) 따라서 위 C과 피고 사이의 상속재산협의분할은 사해행위로서 위

소되어야 마땅합니다.

원고는 권술하였던 증거신청을 통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고 반환되어야 하는 위 C의 상속지분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향후 청구 취지를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2) 그런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는 위 사해행위 이전인 2004. 1. 2. '채권최고액 2,800만원, 근저당권자 F 조합' 인, 2015. 4. 9. '채권최고액 1,560만원, 근저당권자 F 조합' 인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사해행위 이후인 2018. 1. 8. 말소되었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3,240만원, 근저당권자 F 조합' 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갑 제4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따라서 본 사건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이므로, 원고는 2021. 6. 15.까지의 원리금인 금 12,884,918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반환청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청구원인

1. 상속지분 등의 특정

가. 피상속인 E는 2017. 11. 24. 사망하였는데, 당시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G(피고)와 자식들인 H, C(채무자), I이 있었습니다(갑 제5호증 기본증명서, 갑 제6호증 가족관계증명서, 갑 제7호증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참조).

따라서 피고와 채무자 C은 모자관계이고, 채무자 C의 상속지분은 2/9 입니다.

나. 당시 '상속재산'으로는 소장에 첨부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있었는데, 이미 밝혔듯이 위 상속재산 중 2/9 지분은 위 C이 상속받았어야 함에도, 위 상속인들은 위 상속재산 전부를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분할협의를 하였던 것입니다(갑 제7호증 참조).

2. 채무자 C의 무자력

가. 법원행정처의 2022. 2. 15.자 회신에 의하면, C은 2016. 11. 1.부터 이 사건 사례행위 당시(2017. 11. 24.)를 거쳐 조희일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소유하였던 부동산이 없습니다(적극재산의 부재).

나. C은 이 사건 사례행위 당시 이 사건 양수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다. 위와 같이 C은 적극재산이 없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였는

바, 그로 인해 C은 무자위 상태에 빠졌거나 그 상태가 더욱 심화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3. 책임재산의 범위

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사해행위 이전 설정되었던 근저당권(근저당권자 F 조합)이 사해행위 이후 말소되었는 바, 원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반환'청구를 하도록 하겠습니까.

나.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73,000,000원입니다(2018. 1. 5. 기준, 갑 제8호 증 담보물시가추정표 참조).

F 조합의 2022. 1. 24.자 회신에 의하면, 사해행위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은 2,700만 원(1,300만 원, 1,400만 원)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가(7,300만 원)에서 위 채무액(2,700만 원)을 공제한 4,600만 원 중 C의 상속지분 상당액인 10,222,222원(4,600만 원×2/9)이 C의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에 해당되는 책임재산 부분입니다.

다. 원고는 위 책임재산(10,222,222원)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12,884,918원, 갑 3 채권제안서) 중 더 적은 금액인 위 10,222,222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반환청구를 하도록 하겠습니까.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